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정답 및 해설편 10~10p 번호 : 18	오타	ㅅ. (X)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는 권한은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ㅅ. (X) 무기의 관리 및 취급사항을 감독하는 권한은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제2호).
문제편 16~16p 번호 : 36	오타	36 다음은 청원경찰법령상 징계에 관한 내용이다. ()의 ㄱ~ㄴ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36 다음은 청원경찰법령상 징계에 관한 내용이다. ()의 ㄱ~ㄴ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문제편 35~35p 번호 : 13	문제-보기(지문)	1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피한정후견인 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ㄹ.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ㅁ.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 ㅂ. 허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	13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 피한정후견인 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ㄹ.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ㅁ.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ㅂ. 허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
문제편 48~48p 번호 : 55	문제-보기(지문)	ㄷ. 국왕 및 대통령과 그 가족, 외국의 원수, 수상 등은 甲(A)호 경호 대상이다.	ㄷ.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甲(A)호 경호 대상이다.
정답 및 해설편 62~62p 번호 : 55	해설	ㄷ. (X) 수상,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이와 대등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사 등은 乙(B)호 경호대상이다.	ㄷ. (X)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은 乙(B)호 경호대상 이다.
문제편 102~102p 번호 : 48	오타	· (ㄱ) : 상대방의 힘이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집중적으로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는 것	· (ㄴ) : 상대방의 힘이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집중적으로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는 것
문제편 134~134p 번호 : 76	오타	② 정부 의전행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 참석인사에 대한 예우기준에 따라 공적 지위가 없는 인사서열의 경우 직급, 헌법 빛 정부조직법상의 기관, 전직,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정부 의전행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 참석인사에 대한 예우기준에 따라 공적 지위가 없는 인사서열의 경우 직급, 헌법 빛 정부조직법상의 기관, 전직,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정답 및 해설편 179~179p 번호 : 76	오타	현재 정부 의전행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 참석인사에 대한 예우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으나, 실제 공식행사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행사의 성격, 경과보고, 기념사 등 행사의 역할과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table> <tr> <th>직위에 의한 예우 기준</th> <th>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예우 기준</th> </tr> <tr> <td> ·<u>직급(계급) 순위</u>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서 ·상급기관 ·국가기관 </td> <td> ·전 직 ·연 령 ·행사 관련성 ·정부산하단체,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 민간단체장 </td> </tr> </table>	직위에 의한 예우 기준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예우 기준	·<u>직급(계급) 순위</u>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서 ·상급기관 ·국가기관	·전 직 ·연 령 ·행사 관련성 ·정부산하단체,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 민간단체장	현재 정부 의전행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요 참석인사에 대한 예우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고 있으나, 실제 공식행사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행사의 성격, 경과보고, 기념사 등 참석인사의 행사역할과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table> <tr> <th>직위에 의한 예우 기준</th> <th>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예우 기준</th> </tr> <tr> <td> ·<u>직급(계급) 순서</u>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서 ·상급기관 ·국가기관 </td> <td> ·전 직 ·연 령 ·행사 관련성 ·정부산하단체,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 민간단체장 </td> </tr> </table>	직위에 의한 예우 기준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예우 기준	·<u>직급(계급) 순서</u>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서 ·상급기관 ·국가기관	·전 직 ·연 령 ·행사 관련성 ·정부산하단체,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 민간단체장
직위에 의한 예우 기준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예우 기준										
·<u>직급(계급) 순위</u>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서 ·상급기관 ·국가기관	·전 직 ·연 령 ·행사 관련성 ·정부산하단체,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 민간단체장										
직위에 의한 예우 기준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의 예우 기준										
·<u>직급(계급) 순서</u>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서 ·상급기관 ·국가기관	·전 직 ·연 령 ·행사 관련성 ·정부산하단체,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 민간단체장										
정답 및 해설편 235~235p 번호 : 47	해설	② (×) 대통령경호처 :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대통령경호실은 재개편되어 현재 차관급 대통령경호처가 되었다. 시대순으로 네 번째에 해당한다.	② (×) 대통령경호처 : 2008년 2월 29일 '대통령경호실법'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로 개칭되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실장 소속의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었다. 이후 2013년 2월 25일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비서실과 독립된 대통령경호실로 환원되고, 지위도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으나,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다시 대통령경호실은 재개편되어 현재 차관급 대통령경호처가 되었다. 시대순으로 네 번째에 해당한다.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